

[서식 예]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- 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- 피 고 근로복지공단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대표자 이사장 △△△

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에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소외 □□철강주식회사의 현장에서 근무 중 20XX. X. X.에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이는 제7급 6호의 장해등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8급 3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결정 처분하였습니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6 각 참조).



2. 이에 원고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와 둘째 손가락을 상실한 자는 구별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점을 들어 제8급 3호 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결정서 등본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 부 서 1통

2000. 0. 0.

원 고 ㅇ ㅇ ㅇ (인)

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